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대 구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19가단19686 소유권이전등기 등
원 고	A
피 고	1. B
	2. [redacted]국
	3.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
변 론 종 결	2020. 4. 22.
판 결 선 고	2020. 5. 20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[redacted] [redacted]구 C 도로 421.1㎡ 중 484.8분의 49.3지분(피고 B의 지분 전부)에 대하여 1995. 7. 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국,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, 원고와 피고 [redacted]국,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 B : 주문과 같다.
2. 피고 [redacted]국과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주문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 [redacted]국은 [redacted]지방법원 등기국 2007. 11. 22. 접수 제5750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, 피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는 같은 등기국 2008. 2. 1. 접수 제7467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되는 사실

가. 원고는 1995. 7. 3.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[redacted]구 D 공장용지 및 건물을 대금 3억 원에 매수하였다. 위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, 이 사건 부동산은 착오로 누락되어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.

[증거] 피고 B : 자백간주

나머지 피고들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고 B

위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나머지 피고들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등기는 무효이므로,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30

나, 위 위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가.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용

나.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

판사 [redacted]